

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6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17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재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에서 난임시술 등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 이에,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일부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,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은 삭제함.(안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).

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  
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정   안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<u>1.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</u></p> <p><u>2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</u></p> <p>3. ~ 5. (생   략)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1. ~ 3. (원안 제3호부터 제5호       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난임”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

고,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,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 등)**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·정보제공 지원사업
2.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3.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원 중단)**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
2.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
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**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자치구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